

 <p>거창군 Geochang County</p> <p>공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p>	<h1 style="font-size: 4em; margin: 0;">공 보</h1> <p>제804호 2021. 5. 18(화)</p>	
---	--	---

선 결	기관의 장

고 시

제2021-83호 도로명주소 고시 2

공 고

제2021-726호 「거창군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5

제2021-730호 거창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열람공고 11

제2021-736호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4

제2021-738호 거창군계획시설(시설 공공청사)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 29

제2021-743호 지방세환급금 청구권 소멸시효대상 공시송달 공고 32

회 략									
------------	--	--	--	--	--	--	--	--	--

발 행 : 거창군

편 집 : 기획예산담당관 (055-940-3043, 행정 3043)

※ 거창군 공보는 거창군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5. 18.

거창군수

- 부여한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가북로 134-28 등 14건
- 변경한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소만5길 87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 (변경·폐지)사유	비고
(별 도 열 람)				

- 도로명주소 사용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8조,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 제7항에 따라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 이름,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고시내용과 기타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소통과(☎055-940-3313)로 문의하시거나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부여.변경.폐지) 고시 조서

일련 번호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고 시 일		도로명부여사유	이동사유	비고
			도로명	도로명주소			
1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사병리 1383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가북로 134-28	20210518	20091228	가북으로 가는길로 불려진 것에서 유래	건물번호 부여	
2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갈계리 1141-1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송계로 756	20210518	20091228	송계사를 지나 고제면으로 가는 길임을 반영한 도로	건물번호 부여	
3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영승리 329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계동길 229	20210518	20090401	거열산성 밑 계전 골짜기 동쪽에 자리 하므로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 반영	건물번호 부여	
4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박암리 576-1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공수길 29-25	20210518	20090401	유학의 마을 또는 선비의 마을이라는 뜻을 가진 자연마을 이름 반영	건물번호 부여	
5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기리 54-10, 54-2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기리3길 98-139	20210518	20091228	양기,음기를 털골이라한데서 붙여진 법정리명이 반영된 세번째 도로	건물번호 부여	
6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동변리 191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동변2길 11-2	20210518	20090401	동변길 시점으로부터 두번째로 분기되는 도로	건물번호 부여	
7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강천리 764-6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면동길 210-5	20210518	20090401	마을이 잠자는 소의 형국이라하여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도로	건물번호 부여	
8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수원리 246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물안실길 197-16	20210518	20090401	마을에 맑은 물이 흐르고 뒷산이 많을 다자 모양이라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 반영	건물번호 부여	
9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사병리 산49-12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장군봉1길 422-70	20210518	20090401	장군봉이라는 지명이 반영된 첫번째 도로	건물번호 부여	
10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용산리 1054, 산91-4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정봉길 153-273	20210518	20090401	정봉이라는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도로	건물번호 부여	
11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무촌리 1441-1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지하동1길 156-16	20210518	20091228	마을 터가 못 위에 뜬 연꽃과 같다하여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첫번째 도로	건물번호 부여	
12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창선리 339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창선길 91	20210518	20090401	착한 사람이 많이 나서 마을이 번창할 것이라는 뜻에서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도로	건물번호 부여	
13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송정리 1134-9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송정9길 53	20210518	20160420	송정이란 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 부여	

14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2427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승강기단지4길 64	20210518	20170719	승강기전문농공단지 특성 반영	건물번호 부여	
15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강변로 307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소만5길 87	20210518	20090401	마을 북동쪽 모래독길 남쪽에서 아월천 서쪽일때까지의 논들 이름이 반영된 다섯번째 도로	건물번호 변경	

거창군 공고 제2021-726호

「거창군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14일

거창군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공직사회의 건전한 퇴직문화 조성과 지방재정 낭비요인을 개선하기 위하여 예산을 이용한 장기근속·퇴직 기념금품 제공 관행 근거를 삭제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제1호 : 삭제
 - 장기근속 소속공무원에 대한 국외 시찰 지원

4. 예고기간 : 2021. 5. 14.(금) ~ 5. 26.(수)

5. 의견제출

가.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1년 5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2)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3)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다. 주소 : (우50132)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행정과)

라. 전화 055-940-3192, 팩스 055-940-3169, 이메일 sykim6919@korea.kr

6.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행정과 서무담당 ☎(055)940-319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2. 「거창군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 조 례 명 : 거창군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9호까지를 제1호부터 제8호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p> <p>1. 장기근속 소속공무원에 대한 국외 <u>시찰</u> 지원</p> <p>2.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p> <p>3. 장제용품 등 장제비 지원</p> <p>4.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비용 지원</p> <p>5. 단체보장보험 비용 지원</p> <p>6. 구내식당 운영 지원</p> <p>7. 임산부 및 허리질환자 등을 위한 맞춤형 의자 지원</p> <p>8. 출산축하 기념품 지원</p> <p>9. 그 밖에 군수가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p>	<p>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p> <p><삭 제></p> <p>1.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p> <p>2. 장제용품 등 장제비 지원</p> <p>3.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비용 지원</p> <p>4. 단체보장보험 비용 지원</p> <p>6. 구내식당 운영 지원</p> <p>7. 임산부 및 허리질환자 등을 위한 맞춤형 의자 지원</p> <p>7. 출산축하 기념품 지원</p> <p>8. 그 밖에 군수가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p>

관련법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7조(제도개선의 권고)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도개선의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이를 제도개선에 반영하여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이에 대한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제도개선의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이를 재심의 하여야 한다.

거창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열람 공고

거창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의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코자 주민열람 및 주민설명회개최를 계획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5. 18.

거 창 군 수

1. 거창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804,144,882	-	804,144,882	100.00	
주거 지역	소 계	4,873,912	-	4,873,912	0.60	
	제1종전용주거지역	-	-	-	-	
	제2종전용주거지역	-	-	-	-	
	제1종일반주거지역	1,462,455	-	1,462,455	0.18	
	제2종일반주거지역	3,144,368	-	3,144,368	0.39	
	제3종일반주거지역	173,465	-	173,465	0.02	
	준주거지역	93,624	-	93,624	0.01	
상업 지역	소 계	347,740	-	347,740	0.04	
	중심상업지역	-	-	-	-	
	일반상업지역	347,740	-	347,740	0.04	
	근린상업지역	-	-	-	-	
	유통상업지역	-	-	-	-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공업 지역	소 계	1,271,445	-	1,271,445	0.16	
	전용공업지역	-	-	-	-	
	일반공업지역	1,243,003	-	1,243,003	0.15	
	준공업지역	28,442	-	28,442	0.01	
녹지 지역	소 계	25,413,367	-	25,413,367	3.17	
	보전녹지지역	1,654,760	-	1,654,760	0.21	
	생산녹지지역	7,711,971	-	7,711,971	0.96	
	자연녹지지역	16,046,636	-	16,046,636	2.00	
관리 지역	소 계	262,118,324	증)1,785,222	263,903,546	32.82	
	보전관리지역	171,787,051	증)333,127	172,120,178	21.41	
	생산관리지역	8,261,516	증)1,329,237	9,590,753	1.19	
	계획관리지역	82,069,757	증)122,858	82,192,615	10.22	
농 립 지 역	469,415,799	감)1,785,222	467,630,577	58.15		
자연환경보전지역	40,704,295	-	40,704,295	5.06		
미 지 정	-	-	-	-		

※ 기정은 경상남도 고시 제2017-482호(2017.11.30.), 거창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임
나. 용도지역별 변경사유서 : 별첨

2. 열람기간 : 신문게재 익일로부터 21일간
3. 열람장소 : 거창군 도시건축과(☎055-940-3583)
4. 관계도서 열람 및 의견 제출방법 : 관계도서는 거창군 도시건축과에 비치하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보고서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하오니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개인 또는 단체는 열람기간 만료일까지 의견서(공람장소에 비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의견제출할 곳 : 거창군청 도시건축과,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한함)
6. 주민설명회 개최일시 및 장소

일 시	설명회 장소
2021. 05. 26. 13:00	거창군청 중회의실(지하1층)

7. 주민의견서 제출

가. 제출기간 : 공람기간 만료 후 7일 이내

나.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 제출서에 기재하여 제출

8. 기타사항

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도시건축과(055-940-35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은, 행정절차 이행(주민의견 청취, 관계기관 및 관련부서 협의,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전부개정 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5월 17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2.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법령에서 명시된 내용은 조례에서 삭제하고, 조례에 위임된 내용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근거법령 변경(안 제1조 ‘목적’)

－ (현행) 「지방재정법」

－ (개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26조

○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

1.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안 제3조)

※ 주요 개정(변경)사항

－ 조항 순서 : 현 조례 「제19조」 → 안 「제3조」

－ 조항 제목 : 교부결정의 취소 →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 근거 법령 :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제1항제4호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4호

2.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구성·운영 등(안 제4조~제9조)

※ 주요 개정(변경)사항

- ▶ 현행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명칭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변경(안 제4조)
- ▶ 부위원장 선출방법을 규정(안 제4조제1항) :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
- ▶ 위촉직 위원 자격을 규정(안 제4조제2항) : 지방재정 및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군내 기관 및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 군수가 위촉
- ▶ 법 제26조제2항제7호에 따른 조례 위임 사항 규정(안 제4조제4항) :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 직무대행(안 제5조제3항) :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시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대행
- ▶ 회의 소집 방법 규정(안 제6조제4항) :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공지(긴급한 사유 시 2일 전까지)
- ▶ 서면심의 규정(안 제6조제6항) :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위원회 개최가 어려운 경우

○ 법령에서 규정된 사항은 조례에서 삭제

- 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현 조례 제11조)
- 지방보조금 신청, 교부결정, 교부조건, 교부결정통지, 교부방법(현 조례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 지방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사용 등, 지방보조사업의 신고, 성과평가(현 조례 제16조2, 제17조, 제18조)

4. 예고기간 : 2021. 5. 17.(월) ~ 5. 26.(수)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1년 5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기획예산담당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주소 : (우 50132)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기획예산담당관)

다.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 전화 055-940-3053, 팩스 055-940-3029, 이메일 dlwhdthq@korea.kr

라.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2)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그 밖에 참고사항 등

6.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기획예산담당관 예산담당
【☎(055)940-305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2.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 조 례 명 :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1~
----------	-------

제출연월일	2021. 5. .
제 출 자	기획예산담당관

1. 제안 이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법령에서 명시된 내용은 조례에서 삭제하고, 조례에 위임된 내용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근거법령 변경(안 제1조)

- 「지방재정법」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26조

나.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

- 1)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안 제3조)
- 2)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구성·운영 등(안 제4조~제9조)

다. 법령에서 규정된 사항은 조례에서 삭제

- 1) 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현 조례 제11조)
- 2) 지방보조금 신청, 교부결정, 교부조건, 교부결정통지, 교부방법
(현 조례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 3) 지방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사용 등, 지방보조사업의 신고, 성과평가
(현 조례 제16조2, 제17조, 제1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6조,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32조의11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규제혁신담당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1. 5. 17. ~ 2021. 5. 26.
(나) 예고결과 :
- 3) 비용추계서 : 미첨부 사유서 붙임
- 4) 성별영향평가 : 평가의뢰 예정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2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 없이 임의로 지방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2.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군수가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거창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1. 지방재정 및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군내 기관 및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 ③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④ 법 제26조제2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말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 ⑤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⑥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위원회 개최가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7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 ②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8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전과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

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지방보조금법)

[시행 2021. 7. 13] [법률 제17892호, 2021. 1. 12, 제정]

제12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제26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①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3.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채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4. 제25조에 따른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때
5. 제27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가 이루어진 때
6.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단 공표 여부

7. 그 밖에 지방보조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자문을 수행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⑧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⑨ 위원은 제7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

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⑪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기획예산담당관) [시행 2019.11.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조전부개정2019.11.27.)

제2조 삭제<2019.11.27.>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조전부개정 2019.11.27.)

제4조 삭제<2019.11.27.>

제5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의2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되, 필요한 경우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2019.11.27.)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이 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법 제32조의3제8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2. 심신장애,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조전부개정 2019.11.27.)

제7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삭제<2019.11.27.>

제10조(위원회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 및 분과위원회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① 군수는 법 제32조의2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지원 대상·규모·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군 공보나 군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지방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가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 대상 및 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2조(지방보조금 신청) ①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금 부담액(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5. 보조사업 기간
6.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자가 경영하는 주 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5.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7.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8.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13조(교부결정) 군수는 제12조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2019.11.27.)
2.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호삭제 2019.11.27.)

제14조(교부조건) ① 군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지방보조금액에 대한 상당률의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군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지방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군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5조(교부결정 통지) ① 군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교부 결정의 내용(제14조에 따른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조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아

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6조(교부방법) 지방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는 실적비로, 그 밖의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 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전이라도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6조2(지방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사용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을 집행할 때에는 지방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또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을 집행할 때에는 지방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또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인건비 성질의 경비
2. 지방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또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지방보조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따로 정하는 경우(조신설 2019.11.27.)

제17조(지방보조사업의 신고)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지방보조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3. 지방보조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지방보조사업 수행 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5.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제18조(성과평가) ① 군수는 법 제32조의7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지방보조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보조금의 예산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전년도에 교부한 지방보조금보다 감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의 시기·대상·방법 및 실무평가반의 구성·운영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9조(교부결정의 취소) 법 제32조의8제1항제4호에서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지방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2.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군수가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0조(세부기준) 지방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안전부가 정한 기준에 따른다. (타조례 개정 조례 제2420호 2017.11.29.)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기획예산담당관) [시행 2015.12.10.]

(제정) 2015.12.10 조례 제2274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법제업무운영규정」제20조,「지방자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군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제3조(입법예고 대상) ① 군수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입법안을 예고(이하 “입법예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속한 군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군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군민의 권리·의무 또는 군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

2. 그 밖에 입법안의 취지 또는 주요 내용 등이 변경되어 다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4조(입법예고 방법) ①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 입법안의 주요내용, 의견제출기관, 의견제출기간, 홈페이지 주소 등을 명시한 별지 제1호서식을 군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되, 군 홈페이지에는 입법예고할 내용의 전문(신·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방법 외에 신문·방송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고, 해당 입법안의 내용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대하여도 입법예고 사항을 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입법예고 기간)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법예고 기간을 20일 이상으로 한다.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해당 입법안 부서의 장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전자문서를 활용하여 제출된 의견을 포함한다)을 검토하여 입법안에의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 등을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해당 입법안 부서의 장은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그 처리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공청회) 군수는「행정절차법」제45조에 따라 필요할 경우 입법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공포) 자치법규는「지방자치법」제26조에 따라 공포하되, 각각 그 번호를 붙여 공포한다. 이 경우 공포번호

호는 조례·규칙 별로 여러 해에 걸쳐 누적인 일련번호로 표시한다.

제9조(준용) 자치법규에 해당하지 않는 훈령안 등에 대해서도 필요하면 이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제정 2015.12.10. 조례 제227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거창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거창군계획시설(시설: 공공청사)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경상남도 고시 제1994-276(1994.12.31.)호로 최초 결정된 거창군계획시설(공공청사: 농업기술센터)사업 실시계획 인가 신청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1. 05. 18.

거 창 군 수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 136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군계획시설사업(공공청사:농업기술센터)
- 명 칭 : 거창군 미래농업 복합교육관 건립

3. 사업시행 규모 및 내용

가. 결정면적 : 30,503m²

나. 사업개요

종 류	위 치	사업규모(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결정면적	금회시행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공공청사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 1362일원	30,503	1,620	1,015.78	2,050.49	경고 제1994-276호 (1994.12.31.)	

다. 세부내용(동별 개요)

구분	건물명	규모	건축면적	연면적	용적률산정 연면적	비고
주1동	임대농기계보관창고	지상2층	526.89㎡	930.00㎡	930.00㎡	철거
주2동	농기계전용교육장	지상1층	331.19㎡	331.19㎡	331.19㎡	철거
주3동	종기계임대사업소	지상1층	816.75㎡	816.75㎡	816.75㎡	
주4동	유용미생물배양센터	지상2층	211.70㎡	291.17㎡	291.17㎡	
주5동	농기계운영관리실	지상2층	129.60㎡	129.60㎡	129.60㎡	
주6동	농업기술센터	지하1층/ 지상3층	630.32㎡	1,577.61㎡	1,969.38㎡	부분철거
주7동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지상2층	513.88㎡	987.40㎡	987.40㎡	
주8동	미래농업복합교육관	지상3층	1,015.78㎡	2,050.49㎡	2,050.49㎡	금회시행
합계			3,318.03㎡	6,244.79㎡	5,853.02㎡	

4. 사업 시행자

- 주 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 성 명 : 거창군수(농업기술센터)

5.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2. 12. 31.

6. 열람기간 : 신문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

7. 열람장소 : 거창군청 도시건축과(☎055-940-3583)

8.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 붙임참조

9. 의견제출 및 열람 : 사업시행에 관한 세부내용 및 관계서류는 위 열람 장소에 비치하고 토지·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과 주민에게 보이고 있으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내에 의견서를 열람 장소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서식)

- 실시계획(안)에 대한 의견 및 그 사유
- 성 명 :
- 연락처 :
- 기타 참고사항.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m ²)	면적(m ²)	소유자
1	대평리	543-2	구	18,858	907	농림축산식품부
2	대평리	1359-1	대	5,626	370	거창군
3	대평리	1359-14	도	180	180	거창군
4	대평리	1359-19	대	4,164	4,164	거창군
5	대평리	1360-4	도	511	262	거창군
6	대평리	1362	대	7,289	7,289	거창군
7	대평리	1362-3	창고	4,125	4,125	거창군
8	대평리	1362-42	도	620	493	농림축산식품부
9	대평리	1359-3	답	4,136	4,136	거창군
10	대평리	1359-4	답	3,024	3,024	거창군
11	대평리	1359-5	답	1,048	1,048	거창군
12	대평리	1359-13	답	1,997	1,997	김*분
13	대평리	1362-48	도	508	195	농림축산식품부
14	대평리	1365-20	답	1,021	1,021	거창군
15	대평리	1365-21	답	423	423	거창군
16	대평리	1365-22	답	605	605	이*우
17	대평리	908-1	도	545	264	농림축산식품부
합 계				54,680	30,503	

지방세환급금 청구권 소멸시효대상 공시송달 공고

지방세기본법 제64조 제1항(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에 의거 반환 기간이 5년 이상 경과된 지방세환급금에 대하여 군 세입으로 귀속 조치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반환기간 경과된 지방세환급금 군 세입 귀속
2. 공고기간 : 2021. 05. 17. ~ 2021. 05. 31(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자료 참조
4. 법적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64조 제1항
5. 송달내용 : 지방세 환급금 청구권 소멸시효 대상에 해당되는 납세 자께서는 기한 내 아래 연락처로 지방세환급을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신청이 없을 경우 환급금 청구권은 소멸되며, 해당 지방세환급금은 군 세입으로 귀속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사항 : 거창군청 재무과 세입관리담당(☎ 055-940-3255)

2021년 05월 17일

거 창 군 수